

입학·홍보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장안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) 입학·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입학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교 대·내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(개정 2024.4.18.)
3. <삭제> (2024.4.18.)
4. <삭제> (2024.4.18.)
5. <삭제> (2024.4.18.)
6. <삭제> (2024.4.18.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, 위원회는 전임교원중에서 입학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4.4.18.)

② <삭제> (2024.4.18.)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26.8.31.)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(개정 2024.4.18.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4.18.)

② <삭제> (2024.4.18.)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